

## [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]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.

▣ 대상 투자신탁 :

No	명칭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1	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BN084

▣ 주요 변경 내용 :

- 클래스(Class C-I) 추가

▣ 변경 시행일 : 2018년 1월 8일

▣ 변경 대상 서류 : 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 
바라며,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([www.hdcasset.com](http://www.hdcasset.com)) 및  
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# 변경대비표

## [규약]

정정 전	정정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등)</b></p> <p>①~②&lt;생략&gt;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등)</b></p> <p>①~②&lt;생략&gt;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<b>2. C-I 수익증권 :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&lt;개정 2018.01.08&gt;</b>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&lt;신설&gt;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<b>2. C-I 수익증권 &lt;개정 2018.01.08&gt;</b></p>
<p><b>제39조(보수)</b></p> <p>①~② &lt;생략&gt;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&lt;신설&gt;</p>	<p><b>제39조(보수)</b></p> <p>①~② &lt;현행과동일&gt;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<b>2. C-I 수익증권 &lt;개정 2018.01.08&gt;</b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: 연 1000분의 0.3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&lt;부칙2&gt;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p>

**[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<요약정보>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클래스 추가	<신설>	·클래스 추가 및 판매 보수 ·판매 보수 C-I : 0.03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(1)투자전략 3.운용전문인력	2017.03.02기준	2018.01.02기준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설>	· C-I : C2388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설>	· C-I : C2388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연혁추가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: 운용현황	2017.03.02 기준	2018.01.02기준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[ C-I ] <신설>	[ C-I ] -펀드코드:C2388 -최초설정일:2018.01.00 -판매보수:연0.03% -가입자격: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종류별 가입자격	<신설>	13. <b>Class C- I 수익증권</b> :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<신설>	[ C-I ] -선취판매수수료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	<신설>	[ C-I ] - 판매보수:연 0.03%

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주요주주현황	정몽규(87.09%), 이웅렬(12.66%), 기타(0.25%)	엠엔큐투자파트너스(유)(87.34%, 특수 관계인 포함), 기타(12.66%)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	2017.03.02 기준	2018.01.02 기준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
클래스 추가	<신설>	·클래스 추가 및 판매 보수 ·판매 보수 C-I: 0.03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
(1)투자전략 3.운용전문인력	2017.03.02기준	2018.01.02기준